

제3088호
2024. 4.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9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행정관리국)”을“(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관
광과”를 “교육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
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기획재정부)”을“(기획재정부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 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조정 및 업무평가”를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로 한다

6. 성과관리계획 및 정책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7. 중구시설관리 공단에 관한 사항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경제문화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한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제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 2.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 3.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6.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 7. 봉제·인쇄·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 8.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 9.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 10.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 11.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총전의 제7조)의 제목 “(북지환경국)”을 “(북지환경국에 두는 과)”로 한다.
- 제9조(총전의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로 한다.
- 제10조(총전의 제9조)의 제목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
-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1조(총전의 제10조)의 제목 “(설치)”를 “(보건소의 설치)”로 한다.
- 제12조(총전의 제11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 제13조(총전의 제12조)의 제목 “(보건소)”를 “(보건소에 두는 과 등)”으로 한다.
-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14조(총전의 제13조)의 제목 “(설치)”를 “(등의 설치)”로 한다.
- 제15조(총전의 제14조) 중 “처리”를 “총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 ○ 국별 적정 부서 재배치로 통솔 범위 적정화 2. 주요내용 ○ 국 신설(1국) : 경제문화국 ○ 부서 폐지(2과) : 세무 1과, 세무 2과 ○ 부서 신설(4과) : 정책협력과, 세무관리과, 지방세과, 지방소득세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별표 3] (제4조 관련)

2024년 4월 30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303명”을 “1,3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2명”을 “1,28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31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6	-			
3급	1	1			
4급	7	6		1	
5급	65	36	1	13	15
6급 이하 계	1,231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반영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272명 → 1,283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별표3)
 - 총계 : 1,303명 → 1,314명
 - 일반직 계 : 1,295명 → 1,306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으로, “각 각 25일”을 “30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를 개정하고자 함
-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8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3일 가산
-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개정(제24조)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 휴가 신설
 -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30일의 휴가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위촉 금지)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개발
- 3.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
- 4.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사업비,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30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협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협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단 위	대 상	상한 금액
사용료	1시간	50㎡미만	10,000원
		50㎡이상 ~ 100㎡미만	15,000원
		100㎡이상 ~ 150㎡미만	20,000원
		150㎡이상 ~ 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프로그램 이용자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일반강좌)	30,000원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 서울 중구 토박이	중구 주민등록자 감면적용

※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제한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자치회관 규정 정비를 통한 운영 합리성 제고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신설 등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중구민 우선 이용 규정 추가(제11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금지 내용 추가(제20조의2)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제24조~제29조)
-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개정(별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3호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 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교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이 토박이증을 제시하 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 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 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제3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토박이 인증패]

○ 인증패 : 원목 기념패 (크기 : 128mm x 230mm)



[토박이증]

- 신분증 재질(크기) : 폴리염화비닐(PVC)(850mm x 540mm)
- 발급번호 부여방식 : 발급신청연도-일련번호 ex) 2024-001
- 발급대상자 : 서울 중구 토박이 선정자 중 신청자
- 신분증 디자인(안)

발급번호 0000-000

서울 중구 토박이증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00.00.00.

선정년도 : 0000년

위 사람은 '서울 중구 토박이'임을 증명함.

0000. 00. 0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인)

1. 본 증은 발급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자치행정과)

[별지 제1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 신청서

우리구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하신 『서울 중구 토박이』를 찾고 있습니다. 토박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대상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안의 자랑거리	◦ 선조의 직업, 경력, 업적 등 ◦ 가보, 특이한 유품 등			
거주사실 및 옛기억	◦ 최초 정착지역 및 연대 ◦ 거주지 이동(이사) 내역 ◦ 거주지 옛 기억(옛 모습, 역사적 장소, 추억 등) ◦ 중구 내 계속 거주기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증 발급 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선정년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동)	구분 (신규/ 재발급)	수령현황			회수일	회수사유
							수령일자	수령인	토박이와의 관계		

[별지 제 3호 서식]

서울 중구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서울 중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3.5cm×4.5cm)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제1조)
- 토박이의 정의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 선정방법 (제4조)
-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제5조)
-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등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 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법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법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법대명	_____ 자율방법대	대원수	명
	방법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직위 :)		
사업내용	사업명	00 자율방법대 자율방법활동		
	사업계획			
	기간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자율방법대·연합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법대·연합대 지원금 정산서

1. 운영비 정산서

(단위: 원)

수령액	이월액	집행액	잔액	이자수입

2. 순찰실적

구분	순찰횟수	순찰인원	주요 순찰코스
계			
0월			
0월			
0월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지출내역	사용처(상호)	비고
	합계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영수증 등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법대·연합대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야식비/ 운영비/ 소모성운용비 등		지출일	2024.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숫자 기재)			
지출내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명 : ○ 일자 : 0000. 00. 00.(0요일) ○ 채주 : ○ 금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법대장

○○ 자율방법대·연합대 방법일지

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근무자	서명	비고
월 일 (요일) : ~ :				
순찰내용			순찰사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4.27.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자율방범대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3조)
-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10조)
- 자율방범대 포상 사항 규정(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5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입금”을 “수입금 중 구 귀속분의 4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청사 기금과 일반회계로 분산 적립하여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금 재원 중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을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중 구 귀속분의 40퍼센트”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조문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 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과 송달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제5조)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80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3항제8호 중 “통신방문 민원처리”를 “기획·환경 순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9. 전화·방문·인터넷 민원접수 및 총괄관리

제5조 앞에 “제2절 행정관리국”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행정관리국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0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운영부서 제외)

제13조 앞에 “제3절 기획재정국”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기획재정국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하며 제20조를 삭

제한다.

제13조(총전의 제14조)제1호 중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를 “기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정책협력과)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정 혁신 및 창의 제안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5.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7.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총괄관리
8. 공공·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주민 네트워크 운영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현·과년도 체납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세외수입(총괄)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부가국세포함)의 소인 및 과오납금 총당·환불에 관한 사항

제1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법인·개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득세(총괄)에 관한 사항
3.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경제문화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총전의 제1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제문화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 앞에 “제4절 복지환경국”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복지환경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6조(총전의 제22조)제8호 중 “복지환경국내”를 “복지환경국 내”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5절 도시관리국”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도시관리국

제28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4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앞에 “제6절 안전건설교통국”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안전건설교통국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한다.

제41조(총전의 제37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4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한다.

제48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48조를 제52조로 하고, 제52조(총전의 제48조) 제2항제16호 중 “실시”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직제 개편에 따른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의 신설 및 변동사항 개편

2. 주요내용

- 본청의 국·과·담당관, 보건소의 소·과장, 동의 등장 직급 명시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의 신설, 변동사항 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8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314	905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308	901	27	120	258
3급 소개		1	1			
행정		1	1			
4급 소개		7	6		1	
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개		65	36	1	13	15
행정		42	27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개		286	188	4	25	49
행정		167	111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2	9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보건		1			1	
복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 건축6, 지적4, 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개		414	300	15	42	57
행정		231	165	11	10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4	12			12
전산		3	3			
숙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4)		15	14	1		
복지		3	3			
수의		1	1			
보건		9	1		8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 건축15,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2	12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개		370	275	2	28	65
행정		200	153	2	6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9	13			26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복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4	14			
전기운영(전기)		3	3			
사무운영(워드)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개		181	93	5	11	72
행정		53	22	1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28	7			21
전산		1	1			
숙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 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도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2)		7	7			
위생		3	3			
운전		23	3	2	3	15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개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2	2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조직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소수직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등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정원 개정

[예 규]
서울특별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규 제180호

서울특별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각 담당관·부서와 중구보건소의 각 부서, 각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녹색제품 관련 업무의 총괄 부서를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① 구매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확인한 다음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에 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매입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심사) ① 구매부서의 장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괄부서의 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상황 점검) 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반영된 공사·용역 계약자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예외) 구매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 친환경성 고려 사항
- ☐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가? 구매하는 수량은 적정한가?
- ☐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물품을 선택

☐ 품목별 구매·적용 가능성 검토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금액 (원)	검토결과
	합 계				

※ 작성요령

1. 구분란 :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 기재
2. 품명란 :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전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를 기재
공사·용역의 경우에는 반영된 친환경상품의 내역을 기재
3. 검토결과란 :

☐ 구입 가능 경우 : 구입 가능이라 기재

☐ 구입 불가능 경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검토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위한 의무구매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제3조)
- 녹색제품 심사 및 구매이행상황 점검(제4조~제5조)
- 녹색제품 구매예외(제6조)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68호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4. 1. 1. 기준

나. 개별주택수 : 4,829호

(단독주택 2,175호, 다가구 794호, 다중 7호, 주상용 1,694호, 기타 159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